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916
----------	------

2025년 9월 9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8월 8일, 김기덕 의원
2.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3. 상정일자 :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5년 9월 9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기덕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 내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학생의 권리 신장 및 차별을 해소하고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차원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활동 등에 해당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특수교육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항 규정 (안 제4조)
- 통합교육 지원에 대한 상위법 근거하여 특수교육 교원 및 인력 채용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9조의3)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8일 김기덕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916호로 발의되어 2025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교원 및 인력 채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는 교육감이 수립하는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¹⁾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²⁾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현장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수교육 기본계획’³⁾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래 [표-1]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명	2024	2025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문화예술교육	- 대상교: 28교 - 프로그램: 77개 - 참여학생: 319명 - 예산액: 225,000천원	- 대상교: 28교 - 프로그램: 43개 - 참여학생: 253명 - 예산액: 150,000천원
특수학교 협력종합예술 강사 파견	- 대상교: 27교 - 강사수: 45명 - 예산액: 197,456천원	미운영
특수교육대상자 e페스티벌	- 참가학교: 38교 - 참여학생: 83명 - 프로그램: 22개 - 예산액: 14,960천원	- 참가학교: 38교 - 참여학생: 76명 - 프로그램: 23개 - 예산액: 13,180천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육	○ 특수학교방과후학교 예산 지원을 통한 운영	
지역 및 유관기관 연계 문화예술교육(비예산)	○ 특수학교 미8군악대 공연 관람 ○ 서울공예박물관 및 서울시청 박물관 연계 체험활동	

-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2024 서울특수교육(서울시교육청 발행)
 2.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2-2. 진로·직업교육 및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 2-2-2.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 참고로 타 시·도교육청(8개)에서는 이미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⁴⁾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문화예술교육은 일부 조사결과⁵⁾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단순한 예술 활동을 넘어 자기표현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바,

안 제4조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전인적 성장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2) 통합교육 지원(안 제9조의3)에 대한 검토

○ 안 제9조의3은 종전 통합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에 장애유형·장애정도, 학교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교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2항 신설)하고, 이때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까지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항 신설)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⁶⁾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통합교육을

4) 시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법규명	제정일
1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	2024.11.11.
2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024.5.20.
3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	2017.7.7.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	2023.12.18.
5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	2025.4.21.
6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	2024.4.4.
7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3.5.30.
8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	2024.5.17.

5) 출처 : 부산 지적장애학생 어머니 인식 조사(2012) 및 경남 특수학교 특수교사 인식 조사(2016)

6)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위한 시설·설비 등)7)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학급에서 원활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장애유형, 장애정도, 학교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교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8)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각급학교의 장에게 지원인력9)을 제공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안 제9조의3의 제2항 및 제3항은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속적 증가10)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교원 및 지원인력의 채용은 교원 배치 기준11) 및 한정적 예산 등을

7)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2.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3.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9)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10)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추이 : ('19년) 11,922명 → ('24년) 14,546명(2,624명↑) (2025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확대 추진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11) ① 특수학급 **교원** 배치 기준(서울시교육청) : 공립 초·중등학교 특수학급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 및 초·중등 학교급별 교원 배치 기준에 의거하여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

②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

구분	평가기준	배점	비고
정량 평가	특수교육대상자 수	20	
	지원요구 학생 수	30	
	기타 보조인력 수 (자치구청 지원인력 및 사회복지무원)	10	
정성 평가	학교별 지원의 필요성	40	정성 평가를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학교 및 지역적 특성 고려

이유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통합학급 인력 지원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인력 및 예산 확보 노력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0439, 2025.8.20.)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제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장애정도, 학교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적합한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신설></p> <p>7. (생략)</p> <p>② (생략)</p> <p>제9조의3(통합교육 지원)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문화에 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3(통합교육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장애정도, 학교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u></p> <p>③ <u>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적합한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u></p>